

중소기업 focus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지원 제도(1)

- 중소기업범위(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

발간주제	33호 : 중소기업범위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34호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투자촉진지원제도
	35호 :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제도와 중소기업 기업상속지원제도

1

하나.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차이)

□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요구됨

구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업종	· 모든 업종	· 열거된 업종
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주식 30% 직·간접소유+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은 별표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 등이 상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
상한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유예기준	·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3년간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 ·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초과

☞ 조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적용의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②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이를 유예기간이라 함)는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중소기업이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독립성기준을 충족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④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 세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①독립성 기준이나 ②규모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적용의 유예기간 적용횟수

-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부여
- 2015년 이전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후 추가 1회 부여 가능 (예: 유예기간 종료일이 2017.3.31일인 경우 종료 후 1회 추가 부여)

○ 별표 1(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구분	기준
숙박·음식점업(I), 금융보험업(K), 부동산·임대업(L), 교육서비스업(P)	40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M), 사업지원서비스(N), 보건·사회복지사업(Q), 수리·기타개인서비스(S),	600억원
음료(C11), 인쇄·복제기(C18), 의료물질·의약품(C21), 비금속광물(C23), 의료·정밀·광학(C27), 기타제품·제조(C33) (제조업 6개)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E), 운수업(H), 출판·정보서비스업(J)	800억원
식품업(C10), 담배(C12), 섬유(C13), 목재·나무제품(C16), 코크스·석유정제(C19), 화학(C20), 고무·플라스틱(C22), 금속가공(C25), 전자·컴퓨터 및 영상·통신(C26), 그 밖의 기계·장비(C29), 자동차·트레일러(C30), 기타운송비(C31)(제조업 12개)	1000억원
농·임·어업(A), 광업(B), 전기·가스·수도사업(D), 건설업(F), 도·소매업(G), 의복(C14), 가방·신발(C15), 펄프·종이(C17), 1차금속(C24), 전기장비(C28), 가구(C32) (제조업 6개)	15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열거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

☞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겸업)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

○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1. 제조업 : 100명 미만 2.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3. 그 외 업종 : 10명 미만 · 단,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 제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0명 미만 2. 그 외 업종 : 10명 미만(근로자 수만 고려)

☞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해당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2

들. 창업 및 벤처기업지원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 대상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해당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지원내용

-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5년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

- 도소득세과세대상 : ① 토지 또는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기타 특정주식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	--

☞ 60세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시 정산

○ 창업자금 사용요건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30억 초과는 일반증여)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액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0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

○ 지원내용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유예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사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

♣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윤 종 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홈페이지 www.gsbc.or.kr
자료문의 평가조사실
 031-259-7365
 「중소기업 포커스」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